

# 천공방식을 통한 간인사무 처리 규칙

제정 2019. 05. 02. 규칙 제11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문서관리 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 제25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천공방식을 통한 간인사무 처리의 대하여 규정 제60조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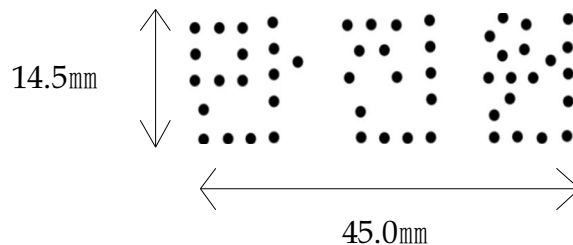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칙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'진흥원'이라 한다)과 관련한 중요 문서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(이하 "간인필요 문서"라 한다)의 간인사무에 적용할 수 있다.

1. 진흥원 회의체에 의한 의결서 및 결정서
2. 진흥원 사업에 따른 계약서 및 협약서
3.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
4. 기타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

**제3조(천공의 원칙)** 간인필요 문서에는 천공기로 문서에 부호를 천공압날함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.

**제4조(천공의 방법)** 간인필요 문서를 천공할 때에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의 상단 부분 또는 하단 부분에 제5조에 따른 부호가 천공되도록 천공기를 사용하여 압날하고,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.

**제5조(진흥원 부호)** 진흥원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.



## 부 칙 (2019. 05. 02. 규칙 제111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